

## V. 인도네시아

## V. 인도네시아

### 1. 개요

- 인도네시아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검사를 거쳐 라벨링을 부착해야 함. 라벨링에는 적어도 제품명, 성분구성표, 순중량 또는 순함량, 제조 및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유효기간을 기본적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인도네시아만의 특이한 ML 및 HALAL의 추가적인 표기에 유의하여야 함
- 즉, 외국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 전체에 대해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발행하는 ML(외국에서 제조된 수입식품의 판매허가 번호)을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이슬람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식품에는 ‘이슬람법에 의거 금지되는 식품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HALAL’ 마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 가. 라벨링 규정 개관

- 인도네시아 식품 라벨링에 관해서는 1999년 7월에 발표한 식품라벨링 및 광고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No.69 Tahun 1999, 이하 ‘해당법’) 및 세부내용을 규정한 식약청장 고시로 규제하고 있음
- 해당법은 총 제8장 제64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크게 제1장 제1조(목적), 제2장 제2조 ~ 제43조(식품 라벨링) 및 제5장 제61조(제재)가 라벨링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조 (목적)
  - 제2조 ~ 제11조 (일반규정)
  - 제12조 ~ 제14조 (라벨의 주요구성)
  - 제15조 ~ 제16조 (라벨의 표기언어)
  - 제17조 ~ 제18조 (제품명)
  - 제19조 ~ 제22조 (성분표시)
  - 제23조 ~ 제25조 (순중량 및 순내용)
  - 제26조 (제조·수입·유통업자의 상호 및 주소)
  - 제27조 ~ 제29조 (개봉후 최소보존기간)

- 제30조 (식품등록번호)
- 제31조 (식품제조코드)
- 제32조 ~ 제33조 (영양구성 정보)
- 제34조 ~ 제35조 (식품 발광 및 유전기술 정보)
- 제36조 ~ 제37조 (자연합성식품 정보)
- 제38조 ~ 제42조 (기타정보)
- 제61조 (제재규정)

○ 라벨링 규정의 도입취지는 다음과 같음

- 공정하고 책임있는 식품 거래문화의 정착
- 국민에게 잘못되거나 판단을 흐릴 우려가 있는 정보의 유포 예방
-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취득권

○ 해당법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pom.go.id/public/hukum\\_perundangan/pdf/FoodLabelling1.pdf](http://www.pom.go.id/public/hukum_perundangan/pdf/FoodLabelling1.pdf))  
에서 영어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음

## 나. 수입허가(ML)

- 지난해 멜라민 파동 이후 외국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 전체에 대해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에서 발행하는 ML(Makanan Luar)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ML를 받기 위한 수입상품에 대한 등록은 수입업자나 독점 에이전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수출업자의 경우 현지 수입업자를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신청서(Form A, Form B), 회사위임장(Letter of Appointment), 보건증명서(Health Certificate), 샘플 3개를 준비하여 아래의 식약청 산하 식품안전평가이사회에 제출하면 됨

Building D 3rdFloor

Jl. Percetakan Negara No.23 Jakarta Pusat

Tel : 62-21-8280-0221 Fax : 62-21-424-5267

- ML 신청을 해도 인증까지 통상 4~5개월이 소요되며 개별 품목당 인증비용도 200~400달러에 달해 신규품목 수출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 HALAL 표기

-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이슬람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식품에는 ‘이슬람법에 의거 금기되는 식품이 아니다’라는 ‘HALAL’ 마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이 HALAL규정은 1996년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이후 보건부, 종교부, 이슬람교 신학자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HALAL 제품에 대한 표기와 인정에 관한 규정을 보완 수정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 HALAL의 표기와 인정은 식약청의 ML 등록 이후 상기의 식품안전평가 위원회에 신청하며 다음의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함
  - 생산제품에 대한 식품 원재료 또는 첨가제, 보조제, 혼합재료 및 기타재료에 대한 명세서
  - 식육품일 경우 이슬람 종교법에 의한 도축장으로부터 인정서
  - 식품 등록시 제품 성분분석표
  - 제품생산과정에 대한 도표
  - 제품 생산등록번호(MD) 또는 수입등록번호(ML)
  - 생산고정 레이아웃
  - 기타 증빙서류
  - 표준작업지시서(SOP)

올해 10월부터 국회의 새로운 할랄 규정으로 이슬람 원로협의회(MUI)의 할랄 증명서를 MUI에서 받아야 함. 관련법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유통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MUI기관에서 발행하는 할랄 마크 증명서 획득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국내유통시장에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음

인도네시아의 보사부 식약청은 식료품 수입 과정에서 할랄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슬람 원로협의회(MUI)에서도 할랄 제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 규정을 준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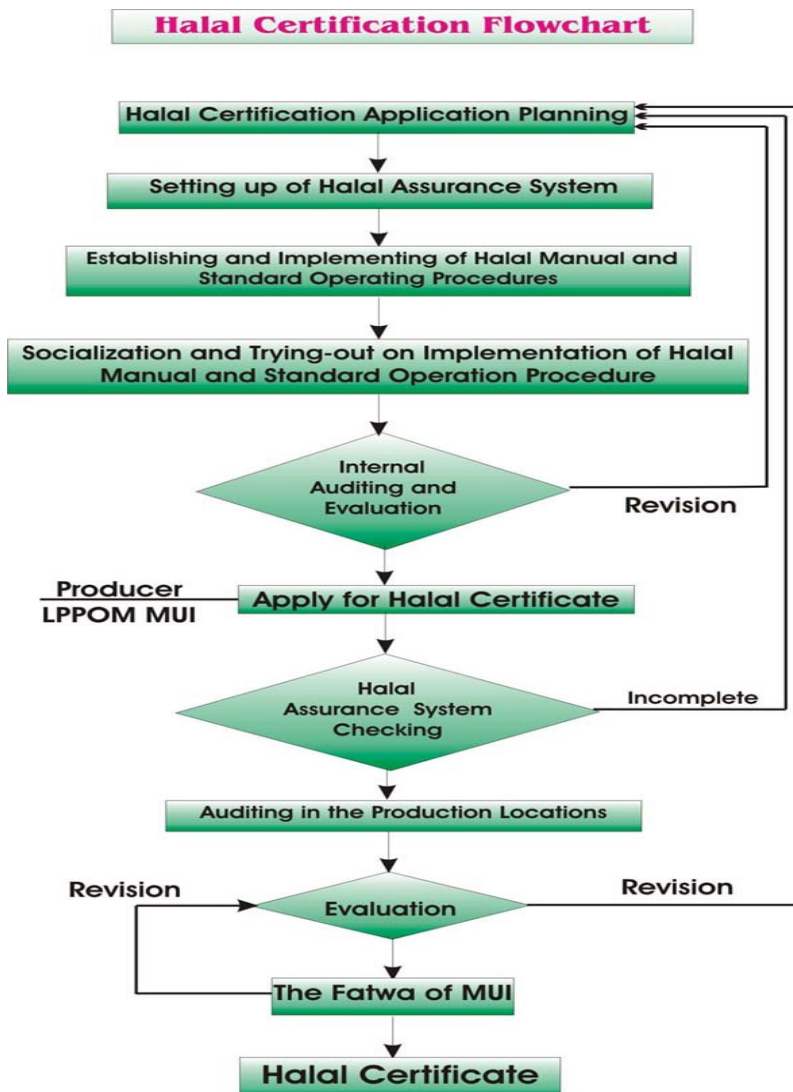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입되고 있는 전 제품에 대한 식약청 등록 검사 기준 외에도 MUI 이슬람 기관의 허용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새로운 제도임

- Halal Certificate 등록 필요 서류
  - LP. POM-MUI 의 서류 양식
  - 식품 재료에 대한 설명 및 가공 방법
  - LP. POM-MUI 에서 인정하는 이슬람 위원회에서 발급받은 Halal Certificate(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Halal Assurance System 관련 서류. 이것은 Halal 매뉴얼에 나와 있다고 함

○ 할랄 인허가 효력 및 등록절차

Halal Certificate 발급이 되며 이 증명은 2년간 유효하며 이후 연장 신청을 하게 됨

<Halal Certification 등록 절차>



## 라. 기본표시사항 및 주의사항

- 인도네시아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검사를 거쳐 라벨링을 부착해야 함. 해당법 제3조에 의거 라벨링에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함
  - 제품명
  - 성분구성표
  - 순중량 또는 순함량
  - 제조 및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 유효기간

또한 ML 및 HALAL를 추가적으로 표기하여야 함

- 표기는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하고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지워지거나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인도네시아어, 아랍 숫자 및 라틴문자를 이용하여야 함
- 표기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금지됨
  - 식품이 병을 치유한다는 언급
  - 식품분석을 행한 학회의 이름, 로고 및 신원에 대한 언급
  - 인도네시아 법령에 저촉되는 언급
  -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도 비타민, 미네랄, 영양강화성분이 첨가 또는 강화되었다라는 언급
- 실제 수입식품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3. 라벨링 관련 문제 사례

### 가. 통관 또는 현지 유통시

- 국내 S사 라면의 경우 계속해서 수입이 되며 이미 ML을 취득하였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도 세관원이 자의적으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최저가격 위반으로 세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음
  - 이 세관원은 항상 500달러 정도의 뇌물을 요구하며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세관에 계속해서 식품이 정척되게끔 하여 해당 업체는 변질 및 유통기한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곤 하였음. 이나마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자주 담당이 바뀌어 해당 세관원 한두 명만을 매수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님



<사진1. 타국산 수입식품 라벨링>



<사진2. 한국 수입식품 라벨링>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식품을 수입하는 업자 중에서 정식으로 ML을 취득하고 한국 본사와 직거래를 하는 업체는 2~3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소량 다품종으로 수입 허가없이 일종의 밀수로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는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나 많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 그 많은 식품아이템 전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일 뿐만 아니라 서울의 본사에서조차 제조 비밀의 노출우려, 한국식약청의 인가 등 식품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선뜻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 비정상적인 수입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신정부 출범이후 거의 두배 가격으로 상승하여 현재 20피트에는 약 5,000달러 가량, 40피트에는 9,000달러 정도가 소요됨. 특히 이슬람 최대명절인 르바란이 다가오면 세관원들의 부정부패가 절정에 달해 한국산 과일 및 추석을 겨냥한 상품들의 통관이 지연되거나 추가로 많은 비용이 소모됨
- 2009년 6월경 수입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자카르타는 물론 지방의 한인슈퍼마켓에서 일부 ML허가를 받은 대기업상품을 제외한 50% 이상의 ML 미등록 식품이 압수 또는 폐기되었음. 이로 인해 오래전

부터 ML 등록을 준비해 온 수입업체를 제외하고는 매출이 크게 줄어 대  
사관에 통해 대책을 호소하기도 하였음



<사진3. 라벨링 미부착으로 압류된 사례1>



<사진4. 라벨링 미부착으로 압류된 사례2>

## 나. 문제해결 방안 및 사례

- ML 미등록 및 라벨링 미부착된 식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며 브로커를 통한 경우 이를 계기로 현지 세관원들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음. 또한 운 좋게 통관되었다손 치더라도 유통과정중에 적발되었을 경우 모두 압수 또는 폐기되어야 하는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음

## 4. 건강식품/특수식품/식품첨가제 관련 표기방법

### 가. 건강식품 및 특수식품의 추가 표기사항

- 건강식품 또는 특수식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표기가 요구됨
  - 식별 가능한 제품코드
  - 보건부에 의해 결정된 유효기간(부패하기 쉬운 식품)
  - 보관지침(유제품과 같은 특정 식품의 경우 필수적)
  - 사용지침(준비 및 취급)
  - 영양가



## 나. 식품첨가제 표기사항

- 식품첨가제가 함유된 식품의 경우 라벨링에 표기되어야 하며 식품첨가제가 식품색소로 분류된 경우 해당 색소 인덱스를 표기하여야 함
- REGULATION NO:722/MENKES/PER/IX/88 ON FOOD ADDITIVES에 의거하여 허가된 첨가물은 다음과 같음
  - 산화방지제
  - 방부제
  - 향 고착제
  - 고화제
  - 산도조절제
  - 착색제
  - 인공감미료
  - 향미료
  - 소택분 개량제
  - 교환수지
  - 유화제, 안정제, 점증제
- 첨가금지 착색제는 보건부 장관령(Permenkes 239/ Menkes/ Per/ IX/ 85 referred to in streetfood 1992)에 30종이 규정되어 있음

## 다. 표기 예시

- 특수식품 및 표기의 예시
  - 감미응축우유(예 - '경고' 6세 미만의 유아에게는 부적합)
  - Haram(돼지를 재료로 사용한 식품)
  - 우유, 유제품, 유아식품 및 살균 통조림(예 - 무염버터, 우유 미함유, 아주 낮은 나트륨, 가벼운 시럽 등)
  - 인공감미료 & 모유대체 식품 & 식품첨가제 & 방사능 식품



## < 참 고 > 인도네시아 - 라벨사진

### ○ 간장



### ○ 참치



○ 아이스크림



○ 소세지



○ 음료수





○ 고추장



○ 차류

